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53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김성원 · 김선교 · 고동진
구자근 · 김종양 · 송석준
유용원 · 박충권 · 박성훈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기에 유치원부터 초, 중, 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함.

그러나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고, 교육의 전문성과 인물의 도덕성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표면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내세워 정당 공천을 배제하였으나, 정당의 공천이 없으니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념과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게 됨.

한편,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선진국의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한국도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 대신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교육감의 임명 등) ① 교육감은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시·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인사청문회) ① 시·도지사는 교육감에 대하여 그 임명 전에 시·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 시·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인사청문요청안이 시·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시·도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의장”은 “시·도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당선”을 “임명”으로, “임기개시일”을 “임명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교육감후보자의”를 “교육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를 “교육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추천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후보자가”를 “교육감이”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을 “후보 추천일을”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의3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제43조부터 제50조의2까지)을 삭제한다.

제8장(제59조)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임명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교육감은 203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의회에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3조(재임 중인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교육감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된 교육감의 임명일 전일까지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u> <u><신 설></u>	<u>제21조(교육감의 임명 등) ① 교육감은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시·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u> <u>② 교육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u> <u>③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u> <u>제21조의2(인사청문회) ① 시·도지사는 교육감에 대하여 그 임명 전에 시·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u> <u>② 시·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u> <u>③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 시·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인사청문요청안이 시·도의회 본회의에서</u>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시·도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의장”은 “시·도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 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제23조(겸직의 제한) ① (생략)
②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23조(겸직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명-----

-----임명일-----
-----.

제24조(교육감의 자격) ① 교육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추천일부터-----
-----.

② 교육감이-----후보추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2. (생략)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① 주

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
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으로 본다.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생략)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생략)

4. 제3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라 교육감의 직을 상실할 때

제6장 교육감선거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선거구)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삭 제>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삭 제>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
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
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
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
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
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
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
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
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삭 제>

<삭 제>

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
를 말한다)별로 후보자의 투표
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
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
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한다.

④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
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⑤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
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
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
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
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
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
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
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

<삭 제>

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 제82조의5, 제82조의7, 제82조의8,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

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 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 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

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위반하
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
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
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
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정
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
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
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
2항제2호·제3항 전단 및 제4
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
명서류”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
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를」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
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
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
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
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
· 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
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
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
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은 “공무
원”으로 본다.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
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
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

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
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
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
(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
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
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으로 본다.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감선거와 「공
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
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
항·제3항, 제135조의2제2항
· 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
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
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

272조제1항·제5항 전단·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한다.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제2항·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삭 제>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
으로 당선된 사람(이하 “교육
감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
한을 갖는다.

②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
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
·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
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
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교육감당선인
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
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2. 해당 시·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교육감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u>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u> <u>대하여</u> <u>인수위원회의 업무와</u> <u>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u> <u>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u> <u>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u>제8장 벌칙</u> <u>제59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u> <u>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u> <u>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삭 제></u> <u><삭 제></u>
---	---